

# 미국의 대규모 지속적인 연간 상품 무역 적자에 기여하는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상호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

## 행정명령

2025년 4월 2일

미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 국제 비상경제권법(50 U.S.C. 1701 이하) (IEEPA),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01 이하) (NEA), 1974년 무역법 개정안 604 조(19 U.S.C. 2483), 그리고 미국 법전 제 3 편 301 조에 따라,

나,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자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족, 불균형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그리고 국내 임금과 소비를 억제하는 미국 교역 파트너의 경제 정책 등이 대규모 지속적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를 초래하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위협은 주요 교역 파트너들의 국내 경제 정책과 세계 무역 시스템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이 위협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나는 미국 우선 무역 정책 대통령 메모를 서명하여 우리나라의 대규모 지속적 연간 상품 무역 적자의 원인, 이러한 적자로 인한 경제 및 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검토하고 식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25년 2월 13일, 나는 "상호 무역과 관세"라는 제목의 대통령 메모에 서명하여 교역 파트너들의 비상호적 무역 관행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지시하고, 비상호적 관행과 무역 적자 간의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2025년 4월 1일, 나는 이러한 조사의 최종 결과를 받았으며, 오늘 그 결과에 기초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속적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는 우리의 제조업 기반을 공동화시키고, 첨단 국내 제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며, 중요 공급망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방위산업 기반이 외국 적대 세력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지속적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는 상당 부분 양자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제조업체가 해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어렵게 만드는 불균형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국내 임금과 소비, 그리고 미국 수출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주요 미국 교역 파트너들의 경제 정책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이 명령이 완화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습니다.

1934 년부터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무역 정책은 상호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의회는 대통령에게 처음에는 양자 무역 협정을 통해, 나중에는 세계 무역 시스템의 후원 하에 주요 교역 파트너로부터 상호적 관세율 인하를 확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934 년부터 1945 년 사이에 행정부는 상호적 기반으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32 개의 양자 상호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서명했습니다. 1947 년부터 1994 년까지 참가국들은 8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그 이후 7 차례의 관세 인하 라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교역 파트너 간의 무역 관계는 특히 최근 몇 년간 매우 불균형해졌습니다. 전후 국제 경제 시스템은 세 가지 잘못된 가정에 기반했습니다: 첫째, 미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자유화를 주도한다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따를 것이라는 가정, 둘째, 그러한 자유화가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경제적 수렴과 미국 교역 파트너들의 국내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 셋째, 그 결과 미국이 대규모 지속적 상품 무역 적자를 누적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상호주의나 외국 경제에서의 국내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 협정, 약속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세계 무역 시스템의 특징으로서 대규모 지속적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최혜국(MFN) 기준으로 자국의 관세율을 제한하고, 따라서 모든 WTO 회원국에게 최고의 관세율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지만, 유사하게 낮은 수준으로 관세율을 제한하거나 상호적 기반으로 관세율을 적용하는 데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WTO 에 따르면 미국은 3.3%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단순 평균 MFN 관세율을 가진 반면, 브라질(11.2%), 중국(7.5%), 유럽연합(EU)(5%), 인도(17%), 베트남(9.4%)과 같은 주요 교역 파트너들은 훨씬 높은 단순 평균 MFN 관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평균 MFN 관세율은 특정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의 훨씬 더 큰 불일치를 감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승용차 수입품(내연 기관 탑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유럽연합(10%), 인도(70%), 중국(15%)은 동일한 제품에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네트워크 스위치와 라우터의 경우, 미국은 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유사한 제품에 대해 인도(10%)는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합니다. 브라질(18%)과 인도네시아(30%)는 미국(2.5%)보다 에탄올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벼 껍질이 있는 쌀에 대한 미국의 MFN 관세는 2.7%(종가세 상당)인 반면, 인도(80%),

말레이시아(40%), 터키(평균 31%)는 더 높은 효율을 부과합니다. 사과는 미국에 무관세로 들어오지만, 터키(60.3%)와 인도(50%)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관세 장벽 역시 미국 제조업체의 세계 시장에 대한 상호적 접근을 박탈합니다. 2025년 외국 무역 장벽에 관한 국가 무역 추정 보고서(NTE)는 세계 각국의 미국 수출에 대한 수많은 비관세 장벽을 교역 파트너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장벽에는 수입 장벽 및 라이선스 제한, 관세 장벽 및 무역 원활화의 부족, 기술적 무역 장벽(예: 불필요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또는 기술 규정), 안전 목표를 더 진전시키지 않고 무역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불충분한 특허, 저작권, 영업 비밀 및 상표 체제와 불충분한 지적 재산권 시행, 차별적 라이선스 요건 또는 규제 표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장벽 및 디지털 제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관행, 투자 장벽, 보조금, 반경쟁적 관행, 국내 국영 기업에 대한 차별, 노동 및 환경 기준 보호 실패, 뇌물, 부패 등이 포함됩니다.

더욱이, 비관세 장벽에는 통화 관행과 부가가치세 등 교역 파트너들의 국내 경제 정책과 관행, 그리고 국내 소비를 억제하고 미국으로의 수출을 촉진하는 관련 시장 왜곡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호주의 부족은 미국의 GDP 대비 소비 비율이 약 68%인 반면, 아일랜드(27%), 싱가포르(31%), 중국(39%), 한국(49%), 독일(50%)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훨씬 낮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동시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정체되었습니다. 교역 파트너들은 새로운 관세 협상과 비관세 장벽 규제 노력 등 다자간 및 복수간 해결책을 반복적으로 저지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경제가 수입품에 불균형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교역 파트너들은 양자 무역 협상에서 미국 수출품에 상호적 대우를 제공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비대칭성은 대규모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를 주도해 왔습니다. 미국이 간헐적으로 양자 무역 흑자를 누리는 국가들조차도,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축적은 그러한 장벽 없이 가능했을 수준보다 그 흑자를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미국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적, 지정학적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국내 생산 능력은 국가 및 경제 안보의 기반입니다.

2017년 내 첫 행정부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모두 국내 제조업 증대가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2023년 유엔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업 생산 중 미국의 제조업 생산 비중은 17.4%로, 2001년 정점인 28.4%에서 하락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제조업 생산의 지속적인 감소는 미국의 제조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국내 제조 능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자동차, 조선, 제약, 기술 제품, 기계 공구, 기초 및 가공 금속과 같은 특정 첨단 산업 부문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이러한 부문에서 충분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 미국의 생산은 영구적으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위 물자와 장비를 제조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부문의 제조 능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많은 군사 장비를 공급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물자 비축량은 미국의 국방 이익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또한, 미국 방위 기업들은 바이오 제조, 배터리,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다양한 중요 부문에서 새로운 첨단 제조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미국이 시민과 국토는 물론 동맹국과 파트너를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보 우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핵심 투입물에 대한 과도한 수입 의존 없이 이러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대규모 업스트림 제조 및 상품 생산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상품에 대한 외국 생산자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또한 미국 공급망이 지정학적 붕괴와 공급 충격에 취약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안보를 저해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측면에서 미국 경제의 취약성은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미국인들이 필수 제품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후티 반군이 중동에서 화물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드러났습니다.

미국 제조 능력의 감소는 제조업 일자리 손실 등 다른 방식으로 미국 경제를 위협합니다. 1997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은 약 5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으며, 역사상 가장 큰 제조업 고용 감소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많은 제조업 일자리 손실이 특정 지리적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제조업 일자리 손실은 가족 형성률 감소와 오피오이드 남용과 같은 다른 사회적 트렌드의 증가에 기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비용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경쟁력의 미래는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제조업은 미국 국내총생산의 단 11%를 차지하지만, 미국 생산성 성장의 35%와 수출의 60%를 차지합니다. 중요하게도, 미국 제조업은 미국 혁신의 주요 엔진으로, 모든 특허의 55%와 모든 연구개발(R&D) 지출의 70%를 담당합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다국적 기업의 중국 R&D 지출이 연평균 13.6%씩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내 R&D 지출은 연평균 5%씩 증가했다는 사실은 제조업과 혁신 간의 강한 연결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모든 제조업 일자리는 다른 관련 산업에서 7~1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촉진하여 우리 경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조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국가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자국의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국가도 오래 생존할 수 없습니다. 2013년 2월 12일자 대통령 정책 지침 21(중요 인프라 보안 및 회복력)은 식량과 농업을 "그 능력 부족이나 파괴가... 보안, 국가 경제 안보, 국가 공중 보건이나 안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약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미국에 필수적인 부문"으로서 "중요 인프라 부문"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내가 임기를 마칠 때, 미국은 농산물 무역 흑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 그 흑자는 사라졌습니다. 교역 파트너들이 부과한 새로운 비관세 장벽들에 의해 소멸된 그것은 연간 490억 달러의 농업 무역 적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명령합니다:

## 제 1 절. 국가 비상사태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의 가장 높은 의무는 국가와 국민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만 40% 이상 증가하여 2024년에 1.2조 달러에 달한 대규모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에 반영된 조건에서 발생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무역 적자는 특히 미국 제조업 및 방위산업 기반의 국내 생산 능력 약화에 기여한 무역 관계의 비대칭성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또한 미국 생산자의 수출 능력과 결과적으로 생산 인센티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비대칭성에는 외국 교역 파트너 간의 비상호적 관세율 차이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줄이면서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외국 교역 파트너의 광범위한 비관세 장벽 사용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에는 기술적 무역 장벽, 비과학적 위생 및 식물위생 규칙, 불충분한 지적 재산권 보호, 억압된 국내 소비(예: 임금 억제), 약한 노동, 환경 및 기타 규제 기준과 보호, 그리고 뇌물 및 부패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미국과 교역 파트너가 비교 가능한 관세율을 가지고 있을 때도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누적 효과는 국내 생산자로부터 외국 기업으로의 자원 이전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확장할 기회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제조업 일자리 손실, 제조 능력 감소, 방위산업 부문을 포함한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외국 기업들은 생산을 확대하고, 혁신에 재투자하며,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해치면서 세계 경제에서 경쟁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특정 중요 및 첨단 산업 부문에서의 충분한 국내 제조 능력 부재 - 대규모 지속적인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의 또 다른 결과 - 는 미국 경제를 공급망 붕괴에 덜 회복력 있게

만들으로써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저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지속적 연간 미국 상품 무역 적자와 그에 따른 산업 능력 손실은 군사적 준비 태세를 저해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미국으로의 수입 흐름을 재조정하기 위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준비 태세와 국가 안보 태세에 대한 이러한 영향은 최근 해외에서의 무력 충돌 증가로 특히 심각합니다. 나는 미국의 국제 경제적 위치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요청합니다.

## 제 2 절. 상호 관세 정책

여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교역 파트너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추가 종가세를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무역 흐름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모든 교역 파트너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추가 종가세는 10%에서 시작하며, 그 후 곧 이 명령의 부록 I에 열거된 교역 파트너에 대한 추가 종가세는 부록 I에 명시된 비율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 종가세는 위에서 설명한 근본 조건이 충족, 해결 또는 완화되었다고 내가 결정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 제 3 절. 이행

(a) 이 명령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미국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법에 따라 10%의 추가 종가세율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2025년 4월 5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또는 그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해 인출된 상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 2025년 4월 5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이전에 적재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최종 운송 모드로 운송 중이고, 2025년 4월 5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해 인출된 상품은 그러한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명령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2025년 4월 9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에, 이 명령의 부록 I에 열거된 교역 파트너로부터 미국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법에 따라 부록 I에 명시된 국가별 종가세율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2025년 4월 9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또는 그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해 인출된 상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 2025년 4월 9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이전에 적재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최종 운송 모드로 운송 중이고, 2025년 4월 9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해 인출된 상품은 이 명령의 부록 I에 명시된 국가별 종가세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가별 종가세율은 아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존 미국 무역 협정의 조건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됩니다.

(b) 이 명령의 부록 II에 명시된 다음 상품들은 법에 따라 이 명령에 따른 종가세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i) 50 U.S.C. 1702(b)에 포함된 모든 물품; (ii)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고 2018년 3월 8일 선언 9704(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수입 조정), 개정안, 2018년 3월 8일 선언 9705(미국으로의 강철 수입 조정), 개정안, 2020년 1월 24일 선언 9980(미국으로의 파생 알루미늄 제품 및 파생 강철 제품 수입 조정), 개정안, 2025년 2월 10일 선언 10895(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수입 조정), 2025년 2월 10일 선언 10896(미국으로의 강철 수입 조정)에 선언된 강철 및 알루미늄의 모든 물품 및 파생품; (iii)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안, 2025년 3월 26일 선언 10908(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에 따라 부과된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iv)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특정 중요 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이 명령의 부록 II에 열거된 기타 제품; (v) 미국 통합관세율표 (HTSUS)의 컬럼 2에 명시된 요율의 대상이 되는 교역 파트너로부터의 모든 물품; 그리고 (vi)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향후 조치에 따라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

(c) 이 명령에 의해 설정된 관세율은 아래 하위 항목 (d) 및 (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다른 모든 관세, 수수료, 세금, 징수 또는 부과금에 추가됩니다.

(d) 캐나다로부터의 물품과 관련하여, 나는 2025년 2월 1일 행정명령 14193(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약물 유통 해결을 위한 관세 부과), 2025년 2월 3일 행정명령 14197(북부 국경 상황에 대한 진전)에 의해 수정되고, 2025년 3월 2일 행정명령 14231(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약물 유통 해결을 위한 관세 수정)에 따라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약물 유통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멕시코로부터의 물품과 관련하여, 나는 2025년 2월 1일 행정명령 14194(남부 국경 상황 해결을 위한 관세 부과), 2025년 2월 3일 행정명령 14198(남부 국경 상황에 대한 진전)에 의해 수정되고, 2025년 3월 2일 행정명령 14227(남부 국경 상황 해결을 위한 관세 수정)에 따라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약물 유통과 불법 이민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국경 비상 관세 조치의 결과로, HTSUS의 일반 주석 11에 따른 캐나다나 멕시코의 모든 상품은 HTSUS의 98장 하위 장 XXIII와 99장 하위 장 XXII에 명시된 모든 대우를 포함하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관련하여, 이러한 우대 조건에 따라 미국 시장에 계속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SMCA에 따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모든 상품은 현재 25%의 추가 종가세의 대상이며, 캐나다에서 수입되고 USMCA에 따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 에너지 또는 에너지 자원 및 포타슘은 현재 더 낮은 10%의 추가

증가세의 대상입니다.

(e) 이 명령에 따라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증가세율은 이 항목의 하위 항목 (d)에 설명된 기존 명령에 명시된 증가세율에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위 항목 (d)에 식별된 명령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USMCA에 따라 원산지로 인정되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든 품목은 추가 증가세율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USMCA에 따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은 12%의 증가세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이러한 증가세율은 에너지 또는 에너지 자원, 포타슘, 또는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완성된 물품의 부품이나 구성요소인 USMCA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 더 일반적으로, 이 명령에 명시된 증가세율은 대상 물품의 가치의 적어도 20%가 미국 원산인 경우에만 대상 물품의 비미국 내용물에만 적용됩니다. 이 하위 항목의 목적상, "미국 내용물"은 미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거나 상당한 변형을 거친 구성요소에 기인하는 물품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 내용물의 가치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입국 신고서와 함께 수입 물품에 관한 정보와 문서를 수집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물품이 미국에서 상당히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할 권한이 있습니다.

(g) 19 CFR 146.43에 정의된 "국내 상태"로 입장할 자격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명령의 2절에 명시된 관세의 대상이 되는 대상 물품으로, 2025년 4월 9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시 1분 또는 그 이후에 자유무역지대에 입장하는 물품은 19 CFR 146.41에 정의된 "특권 외국 상태"로 입장해야 합니다.

(h) 19 U.S.C. 1321(a)(2)(A)-(B)에 따른 관세 면제 최소 처리는 이 항목의 하위 항목 (a)에 설명된 물품에 대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19 U.S.C. 1321(a)(2)(C)에 따른 관세 면제 최소 처리는 상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 하위 항목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 수입을 최소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완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금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통보할 때까지 이 항목의 하위 항목 (a)에 설명된 물품에 대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한 통보 후, 19 U.S.C. 1321(a)(2)(C)에 따른 관세 면제 최소 처리는 이 항목의 하위 항목 (a)에 설명된 물품에 대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i) 중국에서의 저가 수입품에 적용되는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관련 관세를 추가 수정하는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은 이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든 관세와 수수료는 해당 명령에 필요하고 상세히 설명된 대로 대상 물품에 대해 징수됩니다.

(j) 환적과 회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명령이나 후속 명령에 의해 중국의 물품에 대해 부과된 모든 증가세율은 홍콩 특별행정구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물품에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k) 이 명령에 설명된 관세율을 설정하기 위해, HTSUS는 이 명령의 부록에 명시된 대로 수정됩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은 이 명령의 부록에 명시된 날짜에 발효됩니다.

(l) 여기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이 명령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외국 교역 파트너와의 무역에 관한 이전의 대통령 선언, 행정명령 또는 기타 대통령 지시나 지침은 이 명령에 전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료, 중단 또는 수정됩니다.

#### **제4절. 수정 권한**

(a)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경제정책 대통령 보좌관, 무역 및 제조 선임 고문, 그리고 국가안보 대통령 보좌관과 협의하여, 이 조치가 전체 무역 적자 증가나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미국 교역 파트너에 의한 비상호적 무역 약정의 최근 확대를 포함한 위에서 설명한 비상 상황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나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b) 어떤 교역 파트너라도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 관세나 기타 조치를 통해 이 조치에 대응하여 보복할 경우, 나는 이 조치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이 명령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증가시키거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HTSUS를 추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c) 어떤 교역 파트너라도 비상호적 무역 약정을 시정하고 경제 및 국가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충분히 일치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나는 이 명령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감소시키거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HTSUS를 추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d) 미국의 제조 능력과 생산량이 계속 악화될 경우, 나는 이 명령에 따른 관세를 증가시키기 위해 HTSUS를 추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제5절. 이행 권한**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경제정책 대통령 보좌관, 무역 및 제조 선임 고문, 국가안보 대통령 보좌관, 그리고 국제무역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이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IEEPA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각 행정부서와 기관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6절. 보고 요건**

미국 무역대표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경제정책 대통령 보좌관, 무역 및 제조 선임 고문, 그리고 국가안보 대통령 보좌관과 협의하여, NEA의 401(c)항(50 U.S.C. 1641(c))과 IEEPA의 204(c)항(50 U.S.C. 1703(c))에 따라 이 명령에서 선언된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반복적이고 최종적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7절. 일반 조항**

(a) 이 명령의 어떤 내용도 다음 사항을 손상시키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행정부서,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 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일치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예산 배정 가능성에 따라 이행됩니다.

(c) 이 명령은 법률 또는 형평법에서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시행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나 이익, 실질적이거나 절차적인 것을 만들거나 의도하지 않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백악관, 2025년 4월 2일.